



임업·산림 공익직접지불제

임업직불제란?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

시행일

- ▶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
- ※ 「임업·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의무준수 공통사항

- ▶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
- ▶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
- ▶ 비료의 보관 준수 등
- ※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% 감액하여 지급

지급대상 산지

- ▶ 2019.4.1~2022.9.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

지급제외 산지 | 국·공유림, 타직불금 신청산지, 산지전용허가, 산업단지 등
 경영체등록기관 | 지방산림청, 국유림관리소

주민등록 소재지	접수기관	주소	문의처
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	충부지방산림청	32542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2, 1층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소(공주의료원 건너편)	T. 041-850-5300~5303 F. 041-850-5304, 5305
	부여국유림관리소	33123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-16	T. 041-830-5045 F. 041-835-1980

경영체 등록 대상자

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(자연휴양림·자연수목원의 조성·관리·운영업 포함), 임산물 생산·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·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

- ①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(밤, 잣 제외)·약초류·약용류·수목부산물류·관상 산림 식물류(분재 제외)·그 밖의 임산물: 1천㎡이상
- ②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·산나물류·분재: 300㎡이상
- ③ 밤나무: 5천㎡이상
- ④ 잣나무: 1만㎡이상
- ⑤ 표고자목: 20㎡이상
- ⑥ 산림용 종자·묘목생산업자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
- ⑦ ①에서 ⑥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: 3만㎡이상

※ 22년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해야 함.

임업직불제 종류

- ▶ **임산물생산업 직불금**
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
※ 소규모 임가 직불금(0.1~0.5ha), 면적직불금(0.1ha) 이상
※ 지급상한면적 30ha
- ▶ **육림업 직불금**
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
※ 지급상한면적 30ha